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1617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고 3.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124,081원 및 그 중 751,416,94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25.부터 2020. 8.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9. 7. 25.부터 2020. 10. 1.까지 각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제천시 D 전 1656㎡에 관하여 2018. 8.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122,54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22,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변경된 보증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16. 3. 31.	500,000,000	2019. 3. 29.	피고 B
2	2016. 4. 7.	280,500,000 (240,000,000)	2017. 4. 6. (2019. 4. 5.)	피고 B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2019. 4. 1. 이후 적용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3. 31. 5억 원을, 2016. 4. 15. 3억 3,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19. 3. 7.경부터 연체가 발생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피고 회사가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9. 7. 25.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51,416,948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2,211,693원이며, 피고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3,495,440원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 1) 피고 B은 2018. 8. 24. 피고 C에게 제천시 D 전 1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9. 21.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9. 21. 이 사건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57,124,081원(=

보증채무이행금 751,416,948원 + 채권보전비용 2,211,693원 + 위약금 3,495,440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751,416,94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대위변제일인 201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12.까지, 피고 회사는 대위변제일인 201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1.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19. 3. 초순경부터 대출채무를 연체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2019. 7. 25. 실제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C에게 이전된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22,544,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0원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122,544,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22,544,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22,54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8. 24. 이후인 2019. 7. 2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2016. 3. 31. 및 2016. 4. 7.에 각 체결되었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2018. 8.경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약 18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 4. 15.자 3억 3,000만 원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원래의 상환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017. 3.경과 2018. 3.경 두 차례에 걸쳐 상환기일 연장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 회사는 2018. 5.경부터는 거래업체인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2019. 3.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3. 25. 최종적으로 폐업에 이르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대위변제 이전부터 피고 회사나 피고 B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9. 7. 25.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8. 8. 24. 당시 시가는 112,608,000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5,000만 원으로서 시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회사와 E 사이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었는데, 2018. 8. 31. 기준으로 E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277,774,981원 중 250만 원이 변제되어 275,274,981원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의 대표이사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억 9,800만 원 정도이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가 희박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해지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18. 9. 7.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은 2018. 9. 30. 기준으로 348,696,505원인데, 여기에서 위 5,000만 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은 298,696,505원으로 G이 진술한 피담보채무액과 유사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피고 회사는 2019. 2. 22. 그 소유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E가 피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물을 변경해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 회사 소유의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E가 2020. 6. 24. 채권액이 0원으로 기재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 회사와 E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진하, 판사 염정원